

# CASES

## 조정중재사례 소개

### |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 사례 | 보도내용과 무관한 자료화면, 초상권 침해

A 방송사는 신종 기획부동산 사기와 관련한 뉴스를 보도하며 보도내용과는 무관한 신청인들(모 모델하우스 분양 팀장 및 직원 등 9인)이 분양 상담을 하고 있는 영상을 자료화면으로 보도했다. 신청인들은 기획부동산 사기 관련 보도내용과 본인들은 아무 연관이 없음에도 보도로 인해 사기범으로 매도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했다. 해당 중재부는 시청자들이 신청인들을 기획부동산 사기사건과 연관된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며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를 인정하였고, 정정보도 게재 및 신청인들 중 4인에 대해 18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 | 명예훼손 사례 | 단정적인 범죄사실 보도에 대해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

B 방송사는 2011년 모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 C씨(신청인)가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 채무자를 협박하는 등 부패한 경찰이며 이로 인해 해임되었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은 지난해 말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했다. 해당 중재부는 보도내용에서 신청인의 성씨, 소속과 직위를 언급하여 피해자가 특정되었고, 범죄사실을 단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신청인이 피해를 입은 점을 인정하여 추후보도 게재 및 7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피신청인을 설득, 조정이 성립되었다. 한편, 이 건과 관련하여 뉴스통신, 인터넷뉴스서비스, 케이블TV를 상대로 한 조정신청도 추후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원만히 조정이 성립되었다.

## 독자마당

언론중재위원회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론  사람]을 읽고 나서 느낀 점 등을 성명, 연락처와 함께 이메일(pac\_news@pac.or.kr)로 보내주세요.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이현승** \_ 인터뷰 코너로 책장을 넘기는 순간 원우현 교수님의 해맑은 미소가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살아온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바로 나눔입니다”라는 기사인데요, 글을 읽고 나선 원우현 교수님은 미소만큼이나 참 아름다운 분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공감 가는 부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는 미디어 주권의 주인으로서 잘못된 미디어가 생성하는 정보들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될뿐더러 그러한 정보들을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습득하지 못하도록 노력하여야 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정보를 받기만 하는 피동적 소비자이기보다는 정보에 취약한 정보 빈자 편에서 한 번쯤 생각해보고 그들과 함께 노력하여 정보격차를 줄이는 데 힘써야 하지 않나 싶는데요, 원우현 교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모교와 나눔활동으로 언론인으로서 몸소 실천하고 계신다고 하니 정말 존경스럽고 멋지십니다. 저 또한 미디어를 이용하는 미디어 주권의 주인으로서 잘못된 정보들을 올바르게 바로잡고 정보교류에 힘써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니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신승남** \_ 비록 부피가 작은 책이지만, 내용면에서는 중량감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알차고 유익한 기사가 많았습니다. 이렇듯 언론중재 위원회의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고 방식을 적절하게 대변해 주는 고품격 책자 [언론  사람]은 독자들에게 호감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학교폭력보도의 문제점과 사생활 보호에 대한 주요 쟁점논의” 기사는 학생을 가진 학부모들에게 꽤나 유익한 정보거리를 제공한 시사성 넘친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언론법 분야에서 탁월하고 지대한 역할을 했던 원우현 고려대 명예교수를 재조명함으로써 새삼 그의 진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외, ‘신 동의보감’과 ‘이용재의 잡문노트’ 같은 코너 등도 꼼꼼히 정독했습니다. 앞으로도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정하고 중재하는 사례를 좀 더 사실적이고 적극적으로 소개해 주십시오. 날로 발전되어가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상에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송재하** \_ 언론중재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몰랐는데, [언론  사람]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네요. 언론 보도로 인한 오프나 선의의 피해를 조율하고 풀어주는 화해의 장이 언론중재위원회가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좋은 일을 하는 곳이 언론중재위원회네요. 보도의 다양성에 비추어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도 있어서는 안 되기에 언론중재위원회의 임무가 막중하다고 여겨지네요. [언론  사람] 2월호 기사 중에 “나의 언론분쟁 경험+신참 변호사에게 비친 언중위”를 특히 관심 있게 읽어 보았습니다. 언론 소송건과 언중위 조정사건을 담당하면서 느낀점이 생생하게 잘 소개되어 있어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판례토크 -저속한 표현? ‘닥치고’”는 TV 시트콤의 제목에 얹힌 내용에 대해 문제가 되었던 내용이었는데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언론  사람]에서 계속 언론과 관련된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을 많이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